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제안 설명

---

-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88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수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통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확대, 서울형 복지모델 개발 및 역할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